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 이용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순천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 (이하 “생활문화센터” 라 한다.)의 시설을 운영과 사용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시민들이 센터의 시설을 생활문화예술활동에 효율적으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생활문화센터의 사용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며 소규모공연장·다목적연습실, 음악연습실, 녹음실, 동아리실, 학습실 시설의 사용의 범위를 규정한다.

제3조(운영시간 및 휴관) 생활문화센터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운영한다. 단, 순천문화재단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순천문화재단이 순천시와 협의하여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 ① 운영시간 : 평일 10:00~22:00, 토요일 10:00~18:00
- ② 휴 관 일 : 일요일, 공휴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 ③ 대관 신청 접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8시 사이 전화 일정 조정 및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하며 대관료 입금 후 예약확정한다.
(단, 휴게 시간 12:00 ~ 13:00 / 18:00 ~ 19:00 제외)

제4조(사용허가 및 통지)

- ① 시장은 사용허가를 신청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순천시민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센터 사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허가 시 신청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센터 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 사항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면제) 순천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① 국가 또는 전라남도, 순천시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 ② 순천문화재단 이사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순천문화재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문화교육 프로그램 중 한 과목에 한하여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모자·부자 가족세대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 다문화가족
 6. 「순천시 3자녀 이상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중”을 소지한 세대주 또는 그 세대원
 7.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8.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제6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순천문화재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센터의 운영목적에 위배될 때 (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외)
4. 사용허가를 받은 후 이사장의 사전 승인없이 시설을 변경한 경우
5. 사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6. 허위 증명 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7.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8. 그 밖의 규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 2 장 대 관

소규모 공연장·다목적연습실

제1조(사용자 및 사용금액)

- ① 인디뮤지션 직장인 밴드·동호회·시민 등이 원하는 일시에 신청하여 사용한다.
- ②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사단법인·예술협회 등이 원하는 일시에 신청하여 사용한다.
- ③ 생활문화센터에서 모집 운영하는 동호회의 공연에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 ④ 공연장 사용 금액 [별표1] 에 준거한다.

제2조(대관공연의 종류와 운영)

- ① 공연장의 공연은 2가지로 분류한다.
 1. 정기공연
 2. 대관공연
- ② 정기공연은 생활문화센터에서 모집·양성하는 동호회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공연을 말한다.
 1. 운영팀은 행사스케줄을 조정하여 사용자에게 공지하고 순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 행사스케줄과 정보를 공지한다.
 2. 행사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많은 관객이 유치되도록 노력한다.
 3. 정기공연의 운영시간은 당일 10:00~22:00로 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한다.
단, 센터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영동1번지 대관팀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4. 대관 시 공연(행사)계획서를 필히 작성해야 한다.
- ③ 대관공연은 생활문화센터에서 모집·양성하는 동호회 외의 밴드, 뮤지션 혹은 단체 등이 공연장을 일정시간 대관하여 사용하는 공연을 말한다.
 1. 운영팀에게 신청하고 신청한 뮤지션과 단체의 특성을 선별하여 대관한다.
 2. 대관비용은 [별표1] 에 준거한다.
 3. 대관공연의 운영시간은 당일 10:00~22:00로 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한다.
※ 단, 영동1번지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순천문화재단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음 악 연 습 실

제3조(사용자 및 사용금액)

- ① 인디뮤지션 직장인 밴드·동호회·시민 등이 원하는 일시에 신청하여 사용한다.
- ② 공연이나 행사진행은 불가 (※ 연습 및 리허설만 가능)
- ③ 음악연습실 사용 금액은 [별표1] 에 준거한다.

제4조(음악연습실 사용신청)

- ① 음악연습실의 사용을 신청하는 사용자들은 순천문화재단에 신청하고 일시를 조율하여 대관한다.
- ② 사용신청 시 제21조 제1항에 따라 별지 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한다.
- ③ 운영팀은 일정표를 작성하여 순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④ 음악연습실 대관 후 임의적으로 취소한 사용자는 6개월간 사용을 금한다.
- ⑤ 많은 사용자들의 원활한 음악연습실 사용을 위해 1회 2시간으로 제한한다.
- ⑥ 음악연습실 사용은 일주일에 2일 (2회)을 넘지 않는다.
- ⑦ 음악연습실의 운영시간은 월요일~금요일 10:00~22:00, 토요일 10:00~18:00로 한다. (휴관일 제외) 단, 센터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순천문화재단 이사장이 순천시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녹 음 실

제5조(사용자 및 사용금액)

- ① 인디뮤지션 및 직장인 밴드, 동호회, 시민 등이 원하는 일시에 신청하여 사용한다.
- ② 생활문화센터에서 모집·운영하는 동호회 등의 앨범 제작에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 ③ 녹음실 사용 금액은 [별표1]에 준거한다.

※ 녹음 및 앨범제작 시에는 엔지니어는 개인이 동반해야함.

제6조(녹음실 사용신청)

- ① 녹음실의 사용을 신청하는 사용자들은 대관운영팀에게 신청하고 일시를 조율하여 대관한다.
- ② 사용신청 시 구비되어 있는 사용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한다.
- ③ 영동1번지 대관 운영팀은 일정표를 작성하여 순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④ 녹음실 대관 후 임의적으로 취소한 사용자는 일정기간 사용을 금한다.
- ⑤ 대관시간은 1회 4시간으로 정하고, 한 팀당 최대 대관 시간은 1일 1회에 한하여 신청한다.
- ⑥ 녹음실의 운영시간은 월~토요일, 시간은 영동1번지 대관운영팀과 정한다
단, 센터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순천문화재단 이사장이 이를 조절할 수 있다.

동 아 리 실

제7조(사용자 및 사용금액)

- ①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시민 등이 원하는 일시에 신청하여 사용한다.
- ② 생활문화센터에서 모집 운영하는 동호회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 ③ 동아리실 사용 금액은 [별표1]에 준거한다.

제8조(동아리실 사용신청)

- ① 동아리실의 사용을 신청하는 사용자들은 운영직원에게 신청하고 일시를 조율하여 대관한다.
- ② 사용신청시 제21조 제1항에 따라 별지 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한다.
- ③ 영동1번지 대관팀은 일정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④ 동아리실 대관 후 임의적으로 취소한 사용자는 일정기간 사용을 금한다.
- ⑤ 대관시간은 1회 2시간으로 정하고, 한 팀당 최대 대관 시간은 1일 1회에 한하여 신청한다.
- ⑥ 동아리실의 운영시간은 월요일~토요일, 시간은 영동1번지 대관운영팀과 조율하여 정한다. (휴관일 제외) 단, 센터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순천문화재단 이사장이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학 습 실

제9조(사용자 및 사용금액)

- ①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시민 등이 원하는 일시에 신청하여 사용한다.
- ② 생활문화센터에서 모집·운영하는 단체 등의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 ③ 학습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는 [별표1]에 준거하고, 프로그램 운영 시 재료비는 실비 범위에서 사용자 개인이 부담한다.

제10조(학습실 사용신청)

- ① 학습실의 사용을 신청하는 사용자들은 운영팀에게 신청하고 일시를 조율하여 대관한다.
- ② 사용신청 시 제21조 제1항에 따라 별지 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한다.
- ③ 영동1번지 대관 운영팀은 일정표를 작성하여 순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④ 학습실 대관 후 임의적으로 취소한 사용자는 일정기간 사용을 금한다.
- ⑤ 대관시간은 1회 2시간으로 정하고, 한 팀당 최대 대관시간은 1일 1회에 한하여 신청한다.
- ⑥ 학습실의 운영시간은 월요일~토요일, 시간은 영동1번지 대관운영팀과 조율하여 정한다. (휴관일 제외) 단, 센터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순천문화재단 이사장이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제 3 장 대 관 이 용 수 칙

제1조(사용허가) 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조(사용허가의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우선사용)

- ① 개인과 단체의 사용신청 시 입금시간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선정
- ② 여러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시 신청서 작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선정

제4조(허가취소)

- ①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사용 중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동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24시간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생활문화센터의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5. 국가, 전라도, 순천시 등 우선 사용허가 가능 규칙조항에 의거 대관 허가를 취소 시킬 수 있다.
- ② 생활문화센터는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신청시기) 생활문화센터 대관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정기대관 - 반드시 사용일 30일 전에 신청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 생활문화센터의 사정에 따라 순천문화재단 이사장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수시대관 - 사용 예정일 최대 일주일 전. 단,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수시대관 경우 신청예정 최대 일주일 전 -> 신청 당일 변경 불가

제6조(신청방법)

①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사용신청 서식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순천문화재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작성 및 방문 신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요청시) 1부

2. 기타서류 :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요청할 경우 1부

②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신청 접수 후 2일 이내에 사용여부 등을 사용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순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변경)

1.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대관운영팀에게 사전 날짜변경 및 행사 내용 변경시 대관신청일자 3일 전 미리 사전고지 및 변경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3. 사용날짜 변경 시 익월내 변경 제한하며 익월을 넘길 시 취소 및 재대관 신청

※ 세부협의를 순천문화재단과 조율 가능

제8조(사용자의 안전관리) 사용자가 공연·행사·연습·수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 장치나 시설물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변상 책임)

-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중에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문제 장비가 수리되지 않는 경우 판매가의 50% 변상하여야 한다.
- ③ 생활문화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단, 운영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④ 생활문화센터 사용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사항) 순천시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기 시설에 대해서는 순천시민에 한하여 대관 가능하며, 대관료 및 수강료의 경우 2020년에는 [별표1]에 준거하고, 대관은 접수순서에 따른다.